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425
----------	------

2021. 6.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2425	2021.5.25.	2021.6.1.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1.6.21.)	원안동의

III. 제안설명 요지(이정화 도시계획국장)

1. 제안이유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원 수도공급설비 (삼성·봉은배수지)를 2010년 증설하고, 2013년 상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음
-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용자수 증가 및 전담 관리인 부재로 인한 관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상부 휴식공간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조성, 한강 조망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을 위해 배수지 상부 휴식공간을 도시

## 계획시설(공원)로 중복 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22,598.5	증)0.2	22,598.7	서고 제239호 (1977.7.21.)	· 면적오기 정정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	증)22,598.7	22,598.7	-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수도공급설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기 정>



<변 경>

### 3. 추진경위

- '77. 07. 21. :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서울시고시-제239호)
- '10. 07. 01.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0-244호)
  - ▶ 수돗물 안정적 공급위해 기존 시설 증설( $5,902m^2 \rightarrow 22,634m^2$ )
- '10. 08. 26.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강남구고시 제2010-44호)
  -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사항 반영 등( $22,634m^2 \rightarrow 22,598.5m^2$ )

- '13. 06. 30. : 배수지 증설공사 준공 및 상부녹지개방(상수도사업본부)
- '14. 02. 05. : 배수지 상부 녹지 관리 요청(상수도사업본부 → 강남구)
  - ▶ 법적 수도공급시설로 수용 불가 알림
- '20. 01. 22. : 배수지 주민개방 폐쇄통보(상수도사업본부 → 강남구)
- '20. 02. 10.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추진 협의(강남구, 상수도사업본부)
- '20. 05. 08. : 시설중복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확보
- '20. 09. 28. : 시설중복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
- '21. 01. 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유관부서 협의
- '21. 02. 18.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1. 03. 17.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등

- 공람기간 : 2021. 1. 28. ~ 2021. 2. 11.(14일간)
- 주민의견 : 별도의견 없음
- 관련부서 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따라 신설되는 근린공원(22,598.7㎡)은 구 관리공원으로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시설 공원 결정 후 푸른도시국 및 시의회 등과 공사비(리모델링) 편성 관련 재논의</li> </ul>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절차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 이행하겠음</li> </ul>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기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인공구조물 최소화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구조물 최소화를 검토하겠음</li> </ul>	반영

#### IV.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개 요”

- 이 의견청취안은 봉은사 주변 봉은초등학교와 봉은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수도공급시설인(도시계획시설) 삼성·봉은 배수지 상부를 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배경 및 현황”

- 삼성·봉은 배수지는<sup>1)</sup> ‘13년 배수지 증설<sup>2)</sup> 후 상부 녹지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해 왔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수도공급시설 관리주체) 관리 어려움을 들어 녹지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20.1.)<sup>3)</sup>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중복 결정하여 강남구에서 배수지 상부를 공원시설로 관리하려는 것임.
- 대상지는 청담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 연접해 있고 삼성배수지의 고도가 높아 한강 조망이 빼어난 곳이며, 주변에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이 분포해 있어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휴식,운동)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1)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원(22,598.7㎡)

‘77년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서울시고시-제239호)

2) 5,902㎡ → 22,598㎡

3) 이용자수 증가 및 전담 관리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강남구에 폐쇄 결정 통보를 했으나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



○ 대상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자치구 부담이 원칙인 가운데<sup>4)</sup>, 강남구는 대상지의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데 공사비 10억 원, 연간 공원 관리비로 7천3백만 원을<sup>5)</sup> 산정한 한편, 대상지 대부분이 시유지임을 들어<sup>6)</sup> 서울시에 공사비 보조를 요청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 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 시설 그대로 운영하거나 자치구 예산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할 계획임.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표 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li> <li>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li> <li>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공원</li> <li>어린이공원</li> <li>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li> </ul>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자연공원구역</li> </ul>	

5) 인건비 4,8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6) 시유지 21,629.5㎡(95.7%), 구유지 969.2㎡(4.3%)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중복 결정되면, 올해 현재 시설로 공원이 운영되거나 또는 내년 예산으로 시설 정비 후 공원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짐.

## “타당성”

- 사실상 지역사회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공원 보전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다른 배수지들도 상당수 수도공급시설과 공원이 중복 결정되어(검토보고서 붙임1)<sup>7)</sup>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의 공원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서울시 배수지 102개 중 상부가 공원·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46개소이고, 대부분 수도공급시설과 공원이 중복 결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425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안) 내용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22,598.5	증)0.2	22,598.7	서고 제239호 (1977.7.21.)	· 면적오기 정정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근린공원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대	-	증)22,598.7	22,598.7	-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수도공급설비

## 3. 입안사유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강남구 삼성동 82번지 일원 수도공급설비 (삼성·봉은배수지)를 2010년 증설하고, 2013년 상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였음
-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용자수 증가 및 전담 관리인 부재로 인한 관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상부 휴식공간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조성, 한강조망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을 위해 배수지 상부 휴식공간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중복 결정하고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21. 1. 28. ~ 2021. 2. 11.(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서울시보, 및 일반신문(아주경제, 서울신문) 게재
- 주민의견 : 별도의견 없음

####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따라 신설되는 근린공원(22,598.7㎡)은 구 관리공원으로 공사비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시설 공원 결정 후 푸른도시국 및 시의회 등과 공사비(리모델링) 편성 관련 재논의</li> </ul>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절차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 이행하겠음</li> </ul>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기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인공구조물 최소화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구조물 최소화를 검토하겠음</li> </ul>	반영



## 7.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 일시 : 2021. 2. 18.
- 지방의회 : 원안채택

## 8.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시 : 2021. 3. 17.
- 지방의회 : 원안동의

## 9. 환경성·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생태면적률, 물순환 등 총 16개 항목 검토
  - 결과 : 환경 악영향 없음 및 경관변화 미비함(검토 완료)
- 교통성 검토
  - 교통수요 변화없음

## 10.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예산: 1,3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액	2020년	2021년	비고
계	1,300,000	250,000	1,050,000	
공사비(시비협의)	1,000,000	-	1,000,000	• 시설공원 결정 후 공사비 (리모델링) 시비 확보 협의 예정 (푸른도시국-강남구)
용역비(구비)	300,000	250,000	50,000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실시 설계 용역

### ○ 추진경위

- '77. 07. 21. :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서울시고시-제239호)
- '10. 07. 01.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0-244호)
  - ▶ 수돗물 안정적 공급위해 기존 시설 증설(5,902㎡ → 22,634㎡)

- '10. 08. 26.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강남구고시 제2010-44호)
  - ▶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사항 반영 등( $22,634m^2 \rightarrow 22,598.5m^2$ )
- '13. 06. 30. : 배수지 증설공사 준공 및 상부녹지개방(상수도사업본부)
- '14. 02. 05. : 배수지 상부 녹지 관리 요청(상수도사업본부 → 강남구)
  - ▶ 법적 수도공급시설로 수용 불가 알림
- '20. 01. 22. : 배수지 주민개방 폐쇄통보(상수도사업본부 → 강남구)
- '20. 02. 10.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추진 협의(강남구, 상수도사업본부)
- '20. 05. 08. : 시설중복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확보
- '20. 09. 28. : 시설중복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
- '21. 01. 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유관부서 협의
- '21. 02. 18.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채택)
- '21. 03. 17.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련도면 각 1부. 끝.

※ 작성자 :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TF팀 한인식 (☎ 2133-8459)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위 치 도



배수지 전경

○ 대상지 현황사진



상단배수지 현황



하단배수지 현황



○ 대상지 주변 현황



○ 대상지 내부 현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 기정



○ 변경

